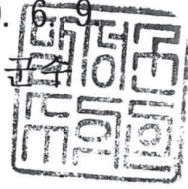


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183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6. 9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2019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총괄

- (1) 지출결정액 : 금1,809,708,000원(금일십팔억구백칠십만팔천원)
- (2) 집행액 : 금1,696,288,680원(금일십육억구천육백이십팔만팔천육백팔십원)
- (3) 이월액 : 해당 없음
- (4) 불용액 : 금113,419,320원(금일억일천삼백사십일만구천삼백이십원)

나. 일반회계

- (1) 지출결정액 : 금1,809,708,000원(금일십팔억구백칠십만팔천원)
- (2) 집행액 : 금1,696,288,680원(금일십육억구천육백이십팔만팔천육백팔십원)
- (3) 이월액 : 해당 없음
- (4) 불용액 : 금113,419,320원(금일억일천삼백사십일만구천삼백이십원)

다. 특별회계

- (1) 지출결정액 : 해당 없음
- (2) 집행액 : 해당 없음
- (3) 이월액 : 해당 없음
- (4) 불용액 : 해당 없음

3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

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관 련 부 서	예비비 배정과목		지 출 결정일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적 요
	편성목	통계목						
합 계				1,809,708,000	1,696,288,680	0	113,419,320	
보건과	소 계			28,600,000	27,040,220	0	1,559,780	
	자산 및 물품취득비	405-01	2019. 1. 8.	28,600,000	27,040,220	0	1,559,780	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
법무 감사실	소 계			900,000,000	900,000,000	0	0	
	배상금등	305-01	2019. 4. 5.	900,000,000	900,000,000	0	0	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지출 (성서5차산단 개발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)
농업 정책과	소 계			161,580,000	57,832,360		103,747,640	
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101-04	2019. 9. 23.	78,480,000	25,808,440	0	52,671,560	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
	사무 관리비	201-01	2019. 9. 23.	46,100,000	18,195,700	0	27,904,300	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
	공공 운영비	201-02	2019. 9. 23.	6,000,000	848,040	0	5,151,960	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
	재료비	206-01	2019. 9. 23.	22,000,000	10,280,180	0	11,719,820	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
	시설비	401-01	2019. 9. 23.	9,000,000	2,700,000		6,300,000	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

관 련 서	예비비 배정과목		지 출 결정일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적 요
	편성목	통계목						
안전 방재과	소 계			619,528,000	619,528,000	0	0	
	시설비	401-01	2019. 10. 25.	116,000,000	116,000,000	0	0	제18호 태풍 미탁 영향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
	시설비	401-01	2019. 10. 25.	357,000,000	357,000,000	0	0	제18호 태풍 미탁 영향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
	시설비	401-01	2019. 11. 15.	146,528,000	146,528,000	0	0	다사서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토지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
문화 체육과	소 계			100,000,000	91,888,100		8,111,900	
	시설비	401-01	2019. 10. 25.	100,000,000	91,888,100	0	8,111,900	제18호 태풍 미탁 영향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

□ 지방재정법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